

붙임2

우대사항 [우리원 「채용업무운영세칙」 별표1]

분 야	항 목	자 격 기 준	가 산 점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회 형평적 채용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취업지원 대상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취업지원)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(취업지원)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*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만 부여함 ※ 단,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)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)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(채용예정인원 무관)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% 또는 10%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애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*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, 중증장애인은 ‘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’ 발급이 가능해야함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 (경증: 5%, 중증: 10%)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초생활 수급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수급자 *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%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문화가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자 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북한이탈주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보호대상자 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부모가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*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자녀양육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	

분야	항목	자격기준	가산점
비수도권 지역인재	강원 지역인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의2(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)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	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%
	비강원 지역인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	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.5%

※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('25. 4. 30.)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

※ 분야별(사회형평적 채용, 비수도권 지역인재)로 각각 우대 적용
(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,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)